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수시배당 도입 〉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86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23.
3. 회 부 일 : 2026.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영국 등은 수시로 배당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 3~4회로 제한되어 있음. 수시배당이 가능한 미국의 경우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식 등의 금융투자 자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배당금이 월급처럼 소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임.

반면,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금융자산은 예금에 편중되어 있고 7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자산 대비 금융투자 자산 비중은 0.2%에 불과함. 또한, 주주환원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나 한국의 주주환원 수준은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며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이에 회사의 누적성과를 토대로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배당하는 수시배당을 도입함으로써 주주환원 증가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2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사업연도 중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할 수 있는 “분기배당”을 회사가 사업연도 중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써 할 수 있는 “수시배당”으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2 등).

현행	개정안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u>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 <u>분기배당</u>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 ----- ----- <u>사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로써</u> ----- ----- ----- <u>수시배당</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u>분기배당금</u> 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 <u>수시배당금</u> ----- ----- -----.
④ <u>분기배당</u> 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u>수시배당</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분기배당</u> 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4. <u>수시배당</u> ----- -----

현행	개정안
⑤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u>분기배당을 하여서는</u> 아니 된다.	⑤ ----- ----- ----- -----수시배당----- -----.
⑥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u>분기배당을</u>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u>분기배당액</u> 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u>분기배당액</u> 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⑥ ----- ----- -----수시배당----- ----- -----수시배당액----- -----수시배당액----- -----.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u>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u>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u>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u>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⑦ ----- -----제354조제1항, 제458조----- ----- -----수시배당----- -----제635조제1항제27호----- -----.
⑧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를 준용하고, 제	⑧ ----- ----- -----

현행	개정안
4항을 위반하여 <u>분기배당</u> 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u>수시배당</u> ----- -----제462조제3항 및 제4항-----.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 ----- ----- ----- ----- ----- ----- -----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165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u>분기배당</u> 을 한 경우	17. ----- ----- <u>수시배당</u> -----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u>분기배당금</u> 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8. ----- <u>수시배당금</u> -----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u>분기배당</u> 을 한 경우	19. ----- <u>수시배당</u> -----
20. ~ 25. (생략)	20. ~ 25. (현행과 같음)

□ 배당은 배당대가의 종류에 따라 현금배당, 주식배당 및 현물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고, 배당금 지급시기에 따라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이루어

지는 결산배당¹⁾,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중간배당²⁾, 분기말에 이루어지는 분기배당³⁾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2)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⑥ 제399조제2항·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⑤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중 분기배당은 현행법 제165조의12에 따른 것으로, 상장회사는 연 최대 3회 분기배당을 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을 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를 보호하고, 투자자에 대한 배당투자를 유도하며, 결산기에 자금의 지급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⁴⁾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의 배당 현황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결산배당을 실시한 회사가 2023년 558개사(69.8%)에서 729개사(86.1%)로, 코스닥시장의 경우

⑥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를 준용하고, 제4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⑨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는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이상복, 「자본시장법」, pp.1432~1433, 2021.

607개사(35.3%)에서 671개사(36.7%)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중간·분기 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71개사에서 158개사로, 코스닥시장의 경우 25개사에서 57개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2025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은 23.5%로 미국(33.0%), 영국(74.6%), 독일(62.1%)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임.

[표1] 2023~2025년 유가증권·코스닥 상장회사 배당현황

구 분		회사수(사)	배당기업(사)	중간·분기(사)	배당금(억원)
2023	유가증권	799	558(69.8%)	<u>71</u>	410,874
	코스닥	1,719	607(35.3%)	<u>25</u>	21,769
2024	유가증권	848	695(82.0%)	<u>123</u>	434,805
	코스닥	1,781	667(37.5%)	<u>32</u>	22,971
2025	유가증권	847	729(86.1%)	<u>158</u>	483,491
	코스닥	1,827	671(36.7%)	<u>57</u>	25,178

(자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STAFF), 각 연도 12월말 기준)

[표2] 주요국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 비교

(단위: %)

연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023	<u>40.4¹⁾</u>	37.0	41.7	55.0	48.4	36.4
2024	31.4	37.8	76.7	62.2	57.0	33.6
2025	<u>23.5</u>	33.0	74.6	62.1	64.8	36.1

주1) 2023년 분모(당기순이익)가 급감하며 높은 배당성향 기록

(자료: 블룸버그 MCSI Index 기준(해당연도 말)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작성)

□ 이에 일정한 시기에 한하여 배당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분기배당 제도를 보다 유연화하여 배당의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즉,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일시에 배당하거나, 연 3~4회로 나누어 배당하거나, 매달 배당하는 등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배당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임.⁵⁾

□ 이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델라웨어주 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DGCL)과 영국의 「회사법」(Companies Act 2006)은 배당 시기에 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결산배당만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 결산배당 외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⁶⁾

□ 개정안은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회사의 배당횟수 및 배당 시기에 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주환원 확대에 기여하려는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5) 황현영, “합리적 배당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이슈보고서 23-09」, 자본시장연구원, 2023. 4. 28.

6) 황현영, “합리적 배당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이슈보고서 23-09」, 자본시장연구원, 2023. 4. 28.

- 다만, 개정안은 수시배당의 경우 기업이 분기배당과 동일한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배당 횟수와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직접적으로 배당 규모와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상장기업들의 배당 시기·횟수의 선택지를 확대하여 주주환원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배당투자 전략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개정안이 기업의 자율적인 주주환원 방식 설계 및 주주의 배당투자 전략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수시배당 도입이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배당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사회와 독립적인 경영 판단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1